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서울시의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도시 시범사업 자치구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3조)

- 1) 구민의 손상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과 안전증진 도모
- 2) 구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안전네트워크를 구축
- 3)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 추진

나.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1) 안전도시 사업의 홍보와 교육에 필요한 물품, 책자 등의 구입·보급과 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의뢰
- 2)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3)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다.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1) 구민의 손상발생현황과 손상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손상 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2) 손상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
- 3) 구민의 일상생활의 장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 4)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

라.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포함 25인으로 구성
 -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 안전도시 사업추진 관련기관, 단체의 장(서부교육청,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 안전도시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
- 4)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 지원

마.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3조)

- 1)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
- 2) 위원장을 제외한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함
 - 안전도시 관련 업무 담당과장
 - 안전도시 사업추진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책임부서의 장
 -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 3) 실무위원회에서는 안 제9조에 규정된 사항 중 실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3. 예산조치 : 서울시보조금 50%, 마포구 50%

4. 조 례 안 : 따로붙임

5.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7. 10. 25 ~ 11. 14)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7. 11. 15)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포구민(이하 “구민” 이라고 한다)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라 함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정신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써,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
3. “안전증진”이라 함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들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및 참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 홍보를 위한 안전용품 구입 및 보급
2.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3. 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의뢰
4.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사항
5.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7조(사업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민의 손상발생현황과 손상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손상 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손상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
3. 국민의 일상생활의 장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4.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2. 안전도시 사업추진 관련기관·단체의 장
3.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안전도시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약과장이 되고, 서기는 의무팀장이 된다.

⑨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이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
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간사는 의무팀장이 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
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전도시 관련 업무 담당과장

2. 안전도시 사업추진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책임부서의 장

3.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제9조에 규정된 사항 중 실무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